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8년 8월 8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건명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8년 8월 8일
<p>제 1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외교통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은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입니다.</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인권 무시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사용한 근로계약서를 직업안정기관(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제출하게 하며, 직업안정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도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 진행하는 현장 조사와 감독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도록 한다.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는 것입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근로계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도한다. ⑦ 근로자의 요청 시 직업안정기관은 현장조사 및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제 1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외교통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은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인권 무시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사용한 근로계약서를 직업안정기관(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제출하게 하며, 직업안정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도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 진행하는 현장 조사와 감독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도록 한다.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근로계약)

-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도한다.
- ⑦ 근로자의 요청 시 직업안정기관은 현장조사 및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신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도한다.

⑦ 근로자의 요청 시 직업안정기관은 현장조사 및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